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어떻게 볼 것인가?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팀장

공적연금에서 보험료율은 통상적으로 재정안정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책정된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장래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일정한 재정안정에 대한 평가들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2003년 재정계산이 처음이었고 이때 적용한 평가기준은 '2070년까지 적립배율 2배 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가능한가?' 이었다. 1차 재정계산시 사용한 인구 및 경제변수 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전망치에 기초할 경우, 이러한 재정안정 평가들을 사용하여 산출되는 장래 필요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급여체계가 가지고 있는 장래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즉 보험료율이나 급여의 재조정을 전제로 하게 된다. 장래에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나 가까운 시간에 완전적립으로의 전환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제도의 경로 의존성, 정책적 실효성,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연금이 선택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대안은 무엇일까?

1. 서론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연금재정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재정계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정계산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2003년에 1차 재정계산이 실시되었고, 2차 재정계산은 2008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확정급여 사회보험연금제도에서 재정운영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급여산식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별 급여지출흐름에 맞추어서 이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총당할수 있도록

수입을 계획하는 재정체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급여지출의 흐름을 추계하고, 현재의 재원조달 방식이 향후 발생할 지출을 총당하기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재원조달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재정계산이다.

사적연금에서는 미래에 수급하게 될 급여에 상응하도록 보험료를 설정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서는 미래에 수급하게 될 급여와 본인 기여금 사이의 연계가 밀접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급여는 40년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60%이고,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급여는 노후소득보장제도

로서 적절한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설정된 것이고, 보험료율은 급여와 별개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공적연금에서 보험료율은 통상적으로 재정안정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책정된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장래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일정한 재정안정에 대한 평가들을 기준으로 산정을 시도한 것은 2003년 재정계산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필요 보험료율을 근거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차 재정계산을 기초로 한 제도대안들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2차 재정계산을 수행해야할 상황이다. 1차 재정계산이후 제시된 다수의 제도개선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란이 일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차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안들이 기초하고 있는 재정안정의 목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한 몫을 하였다. 공적연금에서 재정안정의 평가나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과정이 자칫 재정에 대한 과도한 위기의식이나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제도개혁을 거부하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2차 재정계산에 대한 최종결과는 2008년에 마무리되지만 실질적인 작업은 2007년 올해에 수행된다. 재정계산의 실질적인 수행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시 또 주요 논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1차 재정계산에서의 재정안정 평가들을 재 짚어보고, 그 동안 제시되었던 제도개선안이 가지고 있는 재정안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급여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장래 비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도개선안이 가지는 재정안정안으로서의 의미를 조명하게 될 것이다.

2.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의 재정안정에 대한 평가 기준

2003년 재정계산에 의하면 현재의 보험료율에 따른 장래 수입은 향후 인구고령화 및 제도성숙에 따라 급증하는 급여지출을 총당할 수 없고 재정안정 내지는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3년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준은 "2070년까지 적립배율¹⁾ 2배이상의 적립기금을 보유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가능한가?"이었다. 이 평가기준은 재정적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고려

1) 당해연도 연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기금의 비율

대상 기간' 과 이 '고려 대상기간 동안 또는 기간말에 보유하여야할 기금규모에 대한 목표' 로 이루어져 있다. 통상 '고려대상 기간' 은 추계기간이라고 하고, '고려 대상기간 동안 또는 기간말에 보유하여야할 기금규모에 대한 목표' 는 적립목표라고 한다. 2003년 재정계산에서 추계기간은 향후 70여년이었고, 적립목표는 적립배율 2배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급여수준이 소득대체율 60%, 50%, 40%일 경우에 재정안정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9.85%, 15.85%, 11.8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²⁾.

2003년 재정계산시 추계기간을 2070년까지로 한 것은 추계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불확실성, 제도가 성숙함에 따른 급여지출의 증가, 향후 인구고령화가 가져오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장래의 인구추이, 가입자수 추이, 사망률, 임금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등 다수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장래 가정(assumption)이 필요한데, 이러한 변수들이 가지는 장래의 변화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불확실성은 추계기간이 길어질 수록 커진다³⁾. 즉, 추계기간이 길어지면 그 만큼 추계결과가 가지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래 불확실성에 관한 한 추계기간은 지나치게 길지 않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반면, 제도의 성숙이나 인구고령화를 고려하면 추계기간은 충분히 길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도의 성숙과 관련하여서는 연금제도가 성숙하여감에 따라 수급자수도 증가하고, 수급자의 가입기간 증가로 인해서 연금액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증가를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80년의 기간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고령화 또한 수급자수의 증가, 가입자수의 감소를 가져와 연금재정운영 기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령인구부양비의 추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추계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시 추계기간을 2070년으로 설정하였던 것은 위와 같이 가급적 추계기간을 단축하여야할 필요성과 충분히 길게 설정해야할 필요성 사이에서 찾아진 타협점이었다.

한편 적립목표로 설정된 '적립배율 2배' 는 기금의 적립이라는 성격보다는 유동성 위협에 대비한 비상준비금을 보유한다는 의미에서의 기금규모 수준이다. 이러한 재정안정목표는 사실상 '2070년까지 재정의 수지균형' 을 목표로 한 것으로서 '2070년까지 지불능력 보유' 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적립방식적 접근방식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부과방식적 접근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추후 계속될 재정계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원조달계

획⁴⁾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혁을 전제로 한 방식이다.

2003년 재정계산의 재정안정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첫째는 추계기간이나 적립목표에 따라 필요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임의성의 문제이고 둘째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재정계산을 할 때마다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다는 문제이다. 요컨대 적립목표를 상향 혹은 하향조정함에 따라 재정안정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달라지고, 추계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도 필요한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계산을 할 때마다 새로운 기간이 포함⁵⁾됨에 따라 필요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국민연금이 완전 적립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적립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급능력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적립기금을 보유' 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비용

국민연금의 급여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지표로 부과방식비용률과 완전적립보험료율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지표는 사회보험 연금제도가 채택할 수 있는 보험료율 중 적립기금의 규모와 관련해 양극단에 있는 보험료율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이 두 가지 지표값을 산출하고 비교해 봄으로서 급여비용을 가늠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 완전적립보험료율은 출생연도 코호트(cohort)별 균형보험료율로서 파악하려고 한다. 코호트별 균형보험료율은 출생연도별로 평균적인 대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애 총 기여액과 연금액의 기대치가 일치하는 보험료율로 산출하였다.

먼저 부과방식비용률을 보면, 현행 급여(소득 대체율 60%)와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부과방식비용률은 <표 1>, [그림 1]과 같다⁶⁾.

부과방식비용률은 2020년 이후 S자형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과 인구고령화가 중첩됨에 따라 지출이 급증하는데 기인한 결과이다. 2050년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급여의 경우 30.0%이고 소득대체율이 50%인 경우는 25.2%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완전적립 보험료율의 하나로서 코호트별 균형보험료율이다⁷⁾. <표 2>는 김순옥 · 한정립(2006)이 출생연도 코호트별로 산출한 균형보험료율이다. 이 보험료율은 각 개인을 성별(남,여)과 가족유형(독신, 맞벌이부부, 홀벌이 부

4) 국민연금과 같이 국고보조를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원조달계획은 보험료율의 설정으로 한정된다.
5) 2003년 재정계산에서 추계기간을 2070년까지로 하였으므로, 2008년 재정계산에서도 동일한 추계기간을 유지하려면 2075년까지 추계가 필요하다. 즉, 2071~2075년이 새롭게 추가된다.
6)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2003) 자료를 사용한 것임.
7) 국민연금이 제도초기부터 각 출생세대별로 균형보험료율을 적용하였다면 완전적립의 재정운영이 될 것이지만, 지금부터 코호트 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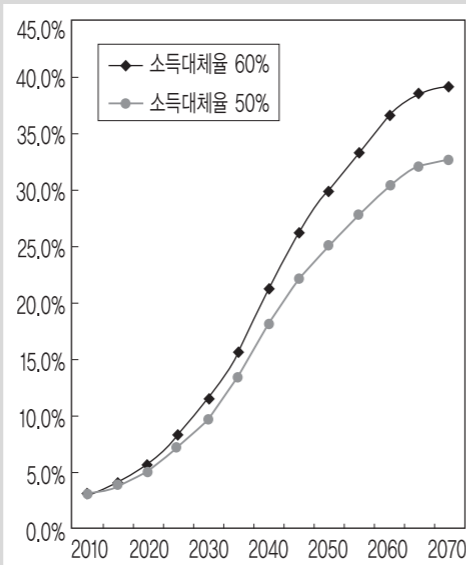
2)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2003.
3) 2003년의 재정계산에서 2070년까지 재정추계를 하였는데, 2003년과 2070년의 시간적 차이와 관련하여 1940년과 2007년의 사회적 변화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 불확실성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소득대체율(%)	
	60%(현행)	50%
2010	3.2	3.1
2015	4.0	3.8
2020	5.7	5.1
2025	8.3	7.3
2030	11.4	9.8
2035	15.9	13.5
2040	21.5	18.2
2045	26.3	22.1
2050	30.0	25.2
2055	33.2	27.9
2060	36.6	30.6
2065	38.5	32.2
2070	39.1	32.7

자료: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

그림 1.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자료: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

부)에 따라 '독신 남자', '독신 여자', '맞벌이 남자', '맞벌이 여자', '남자 홀벌이 가족'로 나누어 각각 개별적 균형(individual equivalence)

보험료율⁸⁾을 산출한 다음 이를 평균한 것이다. 현행 급여에 대한 균형보험료율은 22~23% 수준이고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균형보험료

표 2. 완전적립 보험료율: 코호트별 균형보험료율

급여수준	출생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소득대체율 60%(현행)	21.7	22.4	22.3	22.8	22.9
소득대체율 50%	18.5	18.7	18.6	19.0	19.1

자료: 김순옥·한정림(2006),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 및 필요보험료율 추계(1)』, 국민연금연구원.

형보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현재까지 기여분에 대한 미적립부채를 별도로 상각하지 않으면 완전적립은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완전적립에 가깝다는 의미에서 완전적립이라고 분류한다.

8) 연령별 사망률, 장애발생율을 반영하여 보험료의 기댓값 및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의 기댓값을 산출하였는데, 독신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사망일시금을 반영하고, 남자 홀벌이 모델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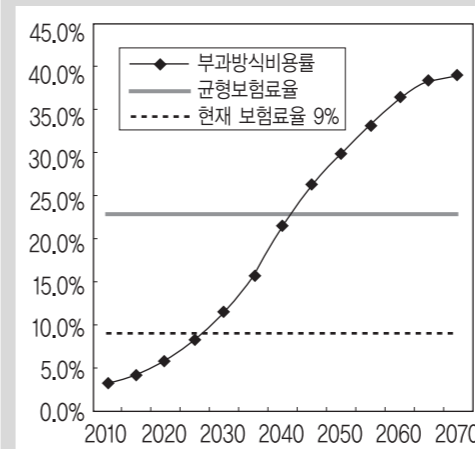
율은 19%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비용률과 완전적립 보험료율을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그림 2], [그림3]과 같다. 완전적립 보험료율은 2005년 출생자들의 코호트별 균형보험료율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국민연금의 재원조달이 완전히 세대간 부양에 의존하게 될 경우의 보험료율 추이이고 균형보험료율은 세대간의 소득이전 없이 각 출생연도 코호트의 급여비용을 그 코호트가 완전히 부담하게 되는 완전적립의 비용률이다.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적용하여 온 보험료율⁹⁾과 현재의 보험료율 9%는 부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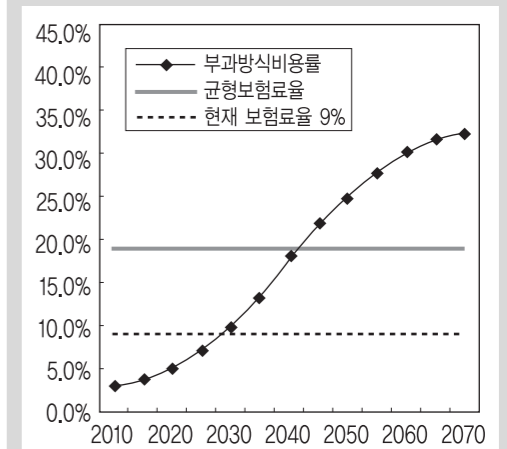
식비용률을 상회하는 보험료율로서 적립기금이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보험료율은 균형보험료율에는 훨씬 못미치는 보험료율 이어서 향후 적립기금의 잠식과 소진이 불가피 하다. <표 1>에서 보면 부과방식비용률이 현재의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점은 2020년대 후반이다. 이 시점부터는 연간 급여지출이 보험료수입을 넘어섬으로서 적립기금에 의한 투자수입이 급여지출비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30년대 중반 부터 적립기금이 급여지출 비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이후 급격히 적립기금이 잠식되어 2040년대 후반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⁰⁾.

그림 2. 보험료율 비교: 소득대체율 60%



자료: 국민연금내부자료(부과방식비용률) 및 필자계산(균형보험료율).

그림 3. 보험료율 비교: 소득대체율 50%



자료: 국민연금내부자료(부과방식비용률) 및 필자계산(균형보험료율).

9)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3%로 시작하여 점차 인상하여 현재의 9%에 이룸.

10)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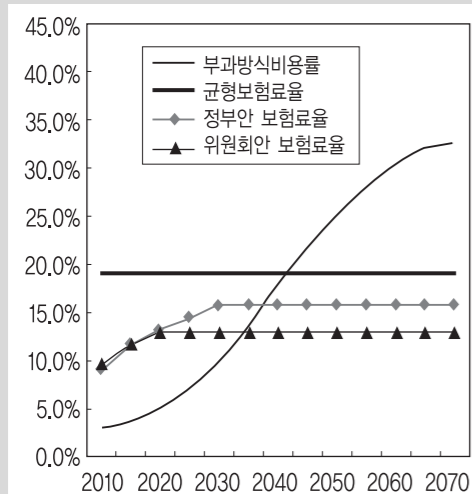
4.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의 제도 개선안

1차 재정계산의 후속조치로 2003년과 2004년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의 조정 및 보험료율의 계획과 관련하여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 50%로 하향조정하고, 보험료율은 15.9%까지 인상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서 보험료율은 2010~2030년 사이에 5년마다 1.38% pt씩 인상조정되고 2030년 이후에는 15.9%로 고정된다. 한편, 2006년 11월말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통과된 위원회의 개정안은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5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2009~2018년 사이에 매년 0.39%pt씩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12.9%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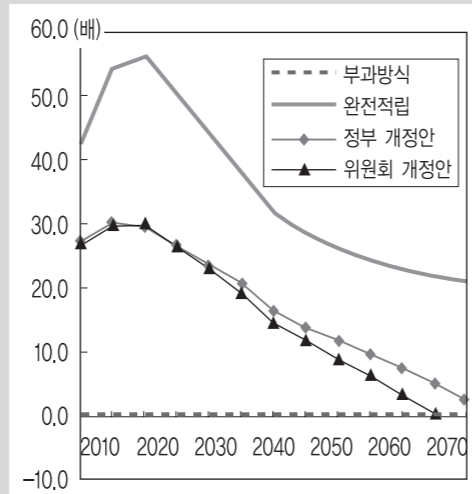
앞에서 국민연금의 제도 비용을 분석하면서 소득대체율이 50%일 경우에 부과방식비용률이 2050년 25.2%, 2060년 30.6%, 2070년 32.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균형보험료율은 1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50%의 급여에 대해서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15.9%, 위원회의 개정안에서는 12.9%의 보험료율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나, 위원회의 개정안이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보험료율 및 적립기금의 추이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자. [그림 4]는 부과방식비용률, 균형보험료율과 정부 개정안의 보험료율, 위원회의 보험료율을 비교한 것이고, [그림 5]는 각각의 경우에 적립기금의 흐름을 적립배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보험료율 비교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정부안, 위원회안, 부과방식비용률) 및 필자계산(균형보험료율).

그림 5. 적립배율 추이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정부안, 위원회안, 부과방식비용률) 및 필자계산(균형보험료율).

정부의 개정안 및 위원회 개정안의 보험료율은 향후 30여년 동안 부과방식비용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기금이 축적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완전적립보험료율보다는 낮아서 장기적으로 적립기금이 감소하고 소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개정안에서의 보험료율은 2003년 재정계산의 재정안정 평가틀을 적용한 것으로서 추계기간을 2070년까지로 하고, 2070년의 적립목표를 '적립배율 2배'로 설정하여 산출한 보험료율이다. 결과적으로 2070년의 적립배율은 2.5배이다. 적립기금의 크기와 관련하여 2.5배의 적립배율은 투자수익금에 의한 수입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한 수준이라기 보다는 유동성 위험 대비한 비상준비금의 수준이다. 즉, 정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2070년까지의 지불능력 보유를 목표로 한 재원조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위원회의 개정안은 보험료율의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 개정안보다 최종보험료율을 낮추되 보험료율의 인상조정기간을 2018년¹¹⁾까지로 앞당겨 상대적으로 기금의 조기 적립을 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가지고 재정불안을 완화하고 있는 구조이다. 적립기금은 2060년대 중반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 개정안과 비교하여 재정안정에 대한 목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개정안이나 위원회 개정안에서 적립

기금이 장래 어느 시점에선가 소진되는 것은 보험료율이 완전적립 보험료율과 부과방식비용률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즉, 개정안의 보험료율은 현재의 보험료율 9%보다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는 하지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도의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자면 보험료율은 완전적립 보험료율이나 부과방식비용률 수준으로 인상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보험료율수준을 완전적립 보험료율 및 부과방식비용률 수준 아래로 묶어둠으로서 영구적인 재정안정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보험료율의 조정 또는 급여의 조정 등 제도개혁을 상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래 부과방식비용율은 후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율 수준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완전적립 보험료율수준을 현재 세대에게 부과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완전적립 보험료율 적용에는 보험료율의 수준도 문제지만 적립기금의 과대축적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제도개선안과 위원회의 개정안은 재정안정에 대한 목표로서 '향후 60~70년간의 지급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적립기금 보유'를 재정안정의 목표로 삼고 이를 점진적인 보험료율의 인상조정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재원조달계획이다. 향후 사

11) 2018년은 국민연금이 도입된지 40년되는 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60~70년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재원조달을 계획하되, 여건이 변화해 감에 따라서 재차 수정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5. 결 론

앞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 및 여당의 개정법률안과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의 개정법률안의 재정안정화 방안, 즉 재원조달계획이 가지는 의미를 부과방식 비용률과 완전적립보험료율과의 관계속에서 살펴보았다.

사실 개정안의 재정계획은 재정안정과 관련하여 지불능력 확보기간에 대한 목표와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보험료율 사이의 조화속에서 찾아진 하나의 해법이다. 이러한 재원조달계획은 일정 시점 후에 새로운 재원조달계획으로 대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영구적인 재원조달계획은 아니다.

국민연금에서 재정안정을 위와 같이 재조정을 전제로 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는 제도의 경로의존성, 정책적 실효성, 미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등과 관련하여 초기단계의 연금제도로서 가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율 조정만 하더라도 현재 수준 9%에서 점진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최종 보험료율

수준은 경제적, 정책적 의미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급여의 조정도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성숙, 수급률 등을 감안하여 유효성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금제도의 장기성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미래가 가지는 불확실성도 현실적 제약이다. 요컨대 장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미래의 사회경제적 여건 또한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정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은 이러한 과정속에서 의미가 찾아져야 할 것이다. 반복적인 재원조달계획 또는 제도의 수정은 제도에 대한 불신을 낳고 제도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분적립방식으로 시작한 확정급여 연금제도로서, 제도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급여에 비해 부담이 낮은 체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저부담·고급여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제도 및 재원조달계획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닌지? 올해 시작될 2차 재정계산에서는 근본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복원**